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53

발의연월일: 2022. 1. 11.

발 의 자 : 윤준병 • 민형배 • 황운하

이성만 • 윤재갑 • 한병도

오영환 • 양이원영 • 김정호

박찬대 • 홍영표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음주음전 금지 위반이나 음주측정 거부 금지를 위반한 초범에 대한 처벌보다 가중된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운전자에게는

형벌 강화는 효과가 없고, 낙관을 교정할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다."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재판관 7:2의 찬성으로 위헌결정 을 내림(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선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측정 불응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를 구별하고, 각각 범법행위를 저질러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처벌의 집행이 끝난 이후 도과한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강한 처벌을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한 사람은"을 "운전한 사람(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정한 비율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 1.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1 00분의 50
- 2.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100분의 30
- ⑥ 제44조제1항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① 제14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 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제14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다시 같은 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삭 제>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	③
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	
는 노면전차를 <u>운전한 사람은</u>	<u>운전한 사람(개</u>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	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
벌한다.	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
	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신 설>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정한 비율까지 가중 하여 처벌한다.

- 1.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100분의 50
- 2.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
 터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100분의 3
 0
- ⑥ 제44조제1항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었는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년 이하의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
 터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